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268
----------	-------

발의연월일 : 2025. 9. 25.

발 의 자 : 이수진 · 김문수 · 서영석
김현정 · 임미애 · 송옥주
백승아 · 백혜련 · 김정호
전종덕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는 여성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이하 “월경용품”)에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해당 세금을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서 월경용품을 포함하고 있으나 제조·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가 최종 가격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비용 부담 경감 효과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기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월경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월경용품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의안번호 제132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 ----- ----- -----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설></u>	<u>7. 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